

「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정관」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.

2024년 4월 3일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김학철

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정관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 개정

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우수인재 발굴·육성과, 강원특별자치도민 평생교육진흥사업”을 “우수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, 평생교육을 진흥하며,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89”를 “85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장학시설”을 “장학사업 및 장학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프로그램 개발·조사·컨설팅”을 “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제5호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을 신설한다.

제14조 본문 중 “상임이사를”을 “원장을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이사는 이사장”을 “이사에는 이사장과 원장”으로 하고,

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제3호 중 “상임이사 :” 를 “원장:” 으로 한다.

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약칭 ‘지방출자출연법’)」 제9조 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
제20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성과계약의” 를 “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아래 기준에 미달한 경우
 - 가.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의 수익이 2년 이상 최근 5년간 평균 수익의 2분의 1이상 감소한 경우
 - 나. 임기 중 경영실적이 사업목적이 유사한 다른 지방 출자·출연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
- 4. 지방출자출연법 제 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22조제1항 중 “사고가 있거나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” 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” 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상임이사·직무·조직)” 을 “(원장·직무)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원장은 상근임원으로 공개모집하며, 세부사항은 인평원 「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- ② 원장은 인평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5조제5호 중 “사업” 을 “주요사업 및 수익사업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정관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28조 중 “매년1회” 를 “매년 1회 정기회를” 로, “이를 수시 개최한다” 를 “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한다” 로 한다.

제29조제2항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 를 “예외로 한다” 로 한다.

제31조의2의 내용 중 “상임이사는” 을 “원장은” 으로 한다.

제33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로 하고, 제32조를 제33조로 하며, 제5장(제32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(직제) ① 인평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인평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.

③ 인평원 직원의 임면, 보수,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④ 인평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명칭과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2의 제목 “(위원회 설치)” 를 “(파견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및 다른 기관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(별지 2)의 2. 기본재산 세부목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재 산 명	수 량	평가액(천원)	비 고
계		33,818,771	
현 금		18,173,612	인재육성기금
건 물	2동, 12,396.96㎡	11,849,736	강원학사(관악) · 강원학사(도봉) 건물
대 지	4필지, 2,284㎡	3,183,899	주차장 부지, 강원학사(도봉) 부지
잡 종 지	3필지, 20,830㎡	611,524	주차장 부지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「민법」, 「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평생교육법」, 「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에 <u>따라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 발굴·육성과, 강원특별자치도민 평생교육진흥사업</u>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라 강원특별자치도</u> ----- ----- <u>우수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, 평생교육을 진흥하며,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</u> ----- -----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춘천시 안마산로 89에 둔다.	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----- ----- 85-----.
제4조(사업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	제4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장학금 지급사업</u>	<삭 제>
3. <u>장학시설의 설치·운영</u>	2. <u>장학사업 및 장학시설</u> -----
4. <u>미래인재육성 및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사업</u>	<삭 제>
<신 설>	
5. <u>강원특별자치도민 평생교육 기회, 정보 제공</u>	4. <u>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사업</u> <삭 제>
6. <u>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</u>	<삭 제>
7. <u>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</u>	<삭 제>
8. <u>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조사·컨설팅</u>	3. ----- 사업
9. <u>평생교육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</u>	<삭 제>
10. <u>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</u>	<삭 제>

11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4조(임원의 보수제한 등) 제23조의
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
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1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(생략)

② 제1항 제1호의 이사는 이사장을
포함한다.

<신설>

제18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
각호와 같다.

1. ~ 2. (생략)

3. 상임이사 :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
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0조의2(임원의 해임) ① 이사장은
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
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
않았을 경우

가. 관계법령 및 정관 또는 규정을
위반한 때

나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
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
손실을 초래한 때

5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임원의 보수제한 등) -----
----- 원장을 -----

--. -----

제1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 이사에는 이사장과
원장--.

③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
근직으로 한다.

제18조(임원의 임기) ① -----
각 호-----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원장: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임원의 해임) ① -----
원장이-----

-----.

1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
영에 관한 법률(약칭 ‘지방출자출연
법’)」 제9조 3항에 따른 의무와 책
임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
았을 경우

<삭제>

<삭제>

다.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
2. 성과계약의 평가 결과 실적이 목표치의 50% 수준에 미달한 경우

3.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사업 목적이 유사한 다른 지방 출자·출연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

4. 경영진단의 결과 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해임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

② (생략)

제2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3조(상임이사·직무·조직)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인평원을 대표하여 직원의 임면 등 책임경영한다.

② 인평원 조직과 직원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장

<삭 제>

2.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-----

3.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아래 기준에 미달한 경우

가.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의 수익이 2년 이상 최근 5년간 평균 수익의 2분의 1이상 감소한 경우

나. 임기 중 경영실적이 사업목적이 유사한 다른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

4. 지방출자출연법 제 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해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----- --.

제23조(원장·직무) ① 원장은 상근임원으로 공개모집하며, 세부사항은 인평원 「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② 원장은 인평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.

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제순으로

이 직무대행을 임명한다.

제25조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
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사업에 관한 사항

6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
속하는 사항

7. (생략)

제28조(회기) 이사회는 매년1회 개최하
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시 개
최 한다.

제29조(이사회의 소집) ① (생략)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
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
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
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
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1조의2(이사회의 회의록 및 비밀누설
금지)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회의결과
및 결과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
하여 출석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을
받아 주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하고 임
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
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

<신설>
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5조(이사회의 기능) -----
각 호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주요사업 및 수익사업-----

6.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--

7.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회기) ----- 매년 1회 정기
회를 ----- 수시로 임
시회를 개최한다.

제29조(이사회의 소집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. -----

--- 예외로 한다.

제31조의2(이사회의 회의록 및 비밀누
설 금지) 원장은 -----

-----.

제32조(직제) ① 인평원의 직제 및 정원
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인평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.

③ 인평원 직원의 임면, 보수, 복무 등
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④ 인평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

제32조의2(위원회 설치)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, 지침 등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(별지 2)

1. 기본재산 총괄

재 산 명	수 량	평가액(천원)
계		<u>33,256,868</u>
현 금		<u>17,611,709</u>

(별지 2)

2. 기본재산 세부목록

재산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평가액 (천원)
계	<u>33,256,868</u>				
현금	-	-	-	-	<u>17,611,709</u>

문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명칭과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2조의2(파견)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및 다른 기관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(별지 2)

1. 기본재산 총괄

재 산 명	수 량	평가액(천원)
계		<u>33,818,771</u>
현 금		<u>18,173,612</u>

(별지 2)

2. 기본재산 세부목록

재산명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(㎡)	평가액 (천원)
계	<u>33,818,771</u>				
현금	-	-	-	-	<u>18,173,612</u>